

사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제49호
----------	-----------

제출년월일 2006. 8 . 21.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물품관리조례」의 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운용관 제도를 신설하고 그 직무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물품관리 사무의 위임 근거 마련 (안 제4조)
 - 시장 ⇒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의 장
- 다. 기증품의 취득 관련 사무를 명확히 함(안 제11조)
- 라. 장부의 전산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4. 주요 토의 과 제 : 없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나. 예산조치 : 없음
-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 라.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2) 입법예고 (2006. 7. 7~7. 31)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 3)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물품관리 조례

제1조중 “(이하 “시”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2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항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물품관리관”을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각 직속기관 소관 물품 : 당해 직속기관의 장
2. 사천시의회 물품 : 사천시의회 사무국장

제9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제11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경상남도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청·소의 장”을 “시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물품출납원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해”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을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시장 또는 청·소의장”을 “물품관리관”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중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을 “물품관리관”으로, 같은조 제4항중 “청·소의 장이“을 “물품관리관은”으로 한다.

제26조 제목 및 본문중 “조제”를 각각 “작성”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 한다.

제27조중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를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로 하고, 같은항중 “(과장이 있는청·소를 포함한다)”를 삭제하며,같은항 후단중 “청·소”를 “직속기관”으로,같은 후단중“청·소의장”을 “직속기관의 장”으로, 같은조 제2항중 “청·소의 장”을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청·소의 장”을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u>사천시물품관리조례</u></p> <p>제1조(목적)이조례는 사천시(이하“시”라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관리책임)①·②(생략) <신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u>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u>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 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①(생략) <신 설></p> <p>② <u>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u></p> <p>제4조 (사무의 위임) (생략) <신 설></p>	<p>제명 : <u>사천시 물품관리 조례</u></p> <p>제1조(---)----- <삭제></p> <p>-----</p> <p>-----</p> <p>-----</p> <p>제2조(-----)①·②(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물품운영관을 지정할 수 있다.</u></p> <p>④제2항 및 제3항---<u>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영관</u>-----</p> <p>-----</p> <p>제3조(-----)①(현행과 같음)</p> <p>② <u>물품운영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u></p> <p>③<u>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u></p> <p>제4조 (-----) ①(현행과 같음)</p> <p>②<u>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u></p> <p>1. 각 직속기관 소관 물품 : 당해 직속기관의 장</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2. 사천시의회 물품 : 의회 사무국장</p> <p>제 9 조 (-----) ①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후 경상남도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신설></p>	<p>② 주관부서의 장은 경상남도기부금품 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③ 경상남도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u>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u>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u>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u>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u>청·소의 장이</u>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u>시장</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6조(장부의 <u>조제</u>)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u>조제</u>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p> <p><신설></p> <p>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u>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u>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 <u>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청·소를 포함한다)</u>이, 기타 <u>청·소의 경우에 청·소의 장이</u> 이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u>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 ----- -----<u>물품관리관</u>----- -----</p> <p>③ ----- ----- -----<u>물품관리관</u>----- -----</p> <p>④ <u>물품관리관은</u> ----- ----- -----</p> <p>제 26 조 (장 부 의 작 성) ① ----- -----<u>작성</u>----- ----- -----</p> <p>② <u>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u> 같음한다</p> <p>제27조(-----) <u>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물품이용관 또는분임물품출납원</u>----- -----</p> <p>제28조(-----) ①영 제 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 -----<삭제>----- -----<u>직속기관</u>----- -----<u>직속기관의 장</u>-----</p> <p>② ----- <u>직속기관의 장</u>----- ----- -----</p>

관 련 법 령 발 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3조 (물품출납공무원) ①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제54조 (물품운용관) ①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제55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둘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제58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88조 (물품의 손·망실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의 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제73조 (사용) ①물품운용관은 법 제7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하고자 하는 물품의 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때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7조 (손·망실처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2. 변상액의 결정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3. 망실 또는 훼손물품의 시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 또는 발견시의 가격·감가정도·내용연수·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